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3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09일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성화대학 등"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2. "관계부처"라 함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신청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성화대학 등으로의 지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4. "통합사무국"이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원사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총괄책임자"란 특성화대학 등에 소속되어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

임자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통합사무국) ① 통합사무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정한다.

② 통합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신청서 접수
2.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3.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사업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4. 특성화대학 등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3장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신청

제4조(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분야) ①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로 한다.

②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 해지, 지원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특성화대학 등 신청요건)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교과목 편성, 교수진, 연구시설 및 장비,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신청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 및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총괄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신청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 융합전공, 산업계 전문가 참여, 전공보유역량 DB화 등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4. 그 밖에 특성화대학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 및 관계부처에서 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 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 처리,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전에 협의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공고는 교육부, 산업통상부 및 통합사무국 홈페이지에 하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단축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통합사무국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사업 선정

제7조(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사업 대상 선정)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사무국의 장에게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자 중에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첨단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중 산학연 전문가
5. 그 밖에 산업통상부 및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는 제5조 각호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사업 대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⑤ 통합사무국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신청요건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부 장

관 및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 및 교육부 장관은 지정 및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선정결과의 통보) 산업통상부 및 교육부 장관은 통합사무국에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 통보하며, 통합사무국의 장은 이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고시)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제8조에 따라 최종 선정 확정된 기관을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특성화대학 등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0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부 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 등에 지정된 경우에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 제7조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사업 대상 선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취소한다.

제11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해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사업 대상 선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성화대학 등이 법 제37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특성화대학 등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3. 관계부처의 장관이 지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지원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 지침과 교육부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동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23-8호, 2023.01.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26-138호, 2026.11.09.>